

##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 정 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4826호) 4조 1항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질병을 포함한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더욱이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시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의 범위나 인정기준 등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보건관련 분야 종사자들은 관심을 갖고 항시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란에서는 관련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및 직업성 암 등과 관련된 업무상 재해 인정에 관한 최근의 법원 판례를 소개한다.

### 직업성 암 ①

## 폐 암

-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
-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6819 판결
- 원심판결

###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암은 물리적인 자극, 발암물질, 바이러스, 방사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폐암의 경우는 대기오염, 가스나 먼지 등의 직업오염, 흡연 등이 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채용될 때나 그 이후에 별다른 질병이 없던 위 망인이 항상 매연과 배기가스, 특히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석면가루가 포함된 먼지가 가득 차 있는 실내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해 오다가 매연과 배기가스, 석면가루 등이 그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면, 위 망인에게 폐암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작업환경 때문에 발병되었거나 이니면 최소한 위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공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